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2. . . (제 회)	

가 맹 사 업 진 흥 에 관 한 법 률
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산업통상자원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의결주문

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가맹사업 실태조사 주기를 법과 동일하게 2년으로 변경하고, 법에서 신설된 가맹사업 해외진출 지원 정보체계 구축과 관련해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, 정보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법 개정으로 가맹사업 실태조사 시행주기를 법에서 2년으로 규정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도 이와 동일하게 변경(안 제4조)
- 나.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가맹사업 해외진출 지원 정보체계 대상 정보 및 정보체계 구축·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(안 제5조)
- 다. 법에서 신설된 정보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또는 해당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가맹사업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수 있는 근거 마련(안 제7조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제1호 중 “3년”을 “2년”으로 한다.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(정보체계의 구축·운영) ① 법 제1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“대통령령으로 정한 정보 및 자료”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국내외 가맹사업의 해외진출 동향
2. 업종별 해외진출 유망지역 정보
3. 유망지역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사례
4. 그 밖의 가맹사업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정보

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해외진출 지원 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운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

1. 정보체계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
2. 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한 사업의 시행
3. 정보체계의 고도화
4. 그 밖에 정보체계의 구축·활용의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

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“법 제18조제1항제5

호”를 각각 “법 제18조제1항제5호부터 제6호까지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실태조사의 범위 등) ① (생략)	제4조(실태조사의 범위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태조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.	② ----- ----- -----.
1. 정기조사: 가맹사업에 관한 계획 및 정책수립과 집행에 활용하기 위하여 <u>3년</u> 마다 실시하는 조사	1. ----- ----- ----- <u>2년</u> ----- -----
2. (생략)	2. (현행과 같음)
③ ~ ⑥ (생략)	③ ~ ⑥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제5조(정보체계의 구축·운영) ① <u>법 제1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“대통령령으로 정한 정보 및 자료”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</u>
	1. <u>국내외 가맹사업의 해외진출 동향</u>
	2. <u>업종별 해외진출 유망지역 정보</u>
	3. <u>유망지역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사례</u>
	4. <u>그 밖의 가맹사업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정보</u>

제7조(업무의 위탁) ① (생략)

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 18조제1항에 따라 법 제18조제1항제5호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1. (생략)

2. 법 제18조제1항제5호의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가맹사업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산업통상자원

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 16조의2제4항에 따른 해외진출 지원 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운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

1. 정보체계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

2. 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한 사업의 시행

3. 정보체계의 고도화

4. 그 밖에 정보체계의 구축·활용의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

제7조(업무의 위탁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- 법 제18조제1항제5호부터 제6호까지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법 제18조제1항제5호부터 제 6호까지-----

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③・④ (생략)	----- ----- ③・④ (현행과 같음)
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	
연 락 처	(044) 203 - 4389